



바로 알기 & 바로 알리기

2013. 달라지는 제도

CONTENTS

이렇게 달라집니다

- 중랑구
- 서울시
- 중앙부처



바로알기 & 바로 알리기

중랑구 달라지는 제도

01.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02. 북스타트 「중랑숲 어린이 도서관」에서 새롭게 운영
03. 동물등록제 의무 시행
04. 무료중개서비스사업 지원기준 확대 시행
05.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06. 겨울철 연탄재 전면 무상수거
07.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실시
08. 만0~5세 무상보육 전면확대 시행
09.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
10. 여권수령 이용 수수료 변경
11. 공공장소 전면 금연확대
1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13. 예방접종 관련 국가 지원 항목 확대

01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관내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간 화상영어학습을 통한 학습능력을 배양하여 글로벌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미래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2094-1895

- 사업내용**
- ▶ 교육대상 :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 교육기간 : 3개월 단위(월 단위 모집)
 - ▶ 수업방식 : 개인별 실시간 원어민(필리핀) 화상영어학습
 - ▶ 교육시간 : 매주 월~금 15:00~23:00
(주3회 월수금 30분/주2회 화목 45분)
 - ▶ 교육방법 : 레벨 테스트와 월말평가를 통한 개인 수준별 수업진행
(초급부터 상급까지 체계적인 10단계 레벨 구성)
 - ▶ 운영방법 : 위탁운영
 - ▶ 수강신청 : 원어민 화상영어학습 사이트 통한 수강신청 및 수강료 결제

※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사이트 : <http://jungnang.pluslang.co.kr>

▶ 수 강 료

학습유형(택1)	1:1	1:2	1:4
수강료(매월)	85,000원	48,000원	28,000원

- 기대효과**
- ▶ 관내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 저렴한 수강료로 학부모의 영어 사교육비 부담 최소화
 - ▶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과 컴퓨터만 있으면 학습 가능

02

북스타트 「중랑숲 어린이도서관」에서 새롭게 운영

어린이 전용 도서관인 중랑숲 어린이 도서관이 우리지역에 최초로 개관함에 따라 ‘독서를 평생습관으로 만들자’는 북스타트 운영의 취지를 살려 중랑숲 어린이 도서관에서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2094-1913

- 사업내용**
- ▶ 시행일 : 2013. 01. 15일.
 - ▶ 일 시 : 연중(매주 화요일 09:30~12:00)
 - ▶ 장 소 : 중랑숲 어린이 도서관(망우동)
 - ▶ 대 상 : 중랑구 거주 생후 6~7개월 된 영유아부터 취학 전 아동
 - ▶ 내 용
 - 북스타트 회원등록 및 1·2·3 성장 단계별 책꾸러미 전달 (북 스타트데이 운영)
 - 엄마와 함께 하는 힐링독서 (부모교육 강연회 및 유아독서 교육)
- 기대효과**
- ▶ 운영상 문제점의 개선, 보완을 통하여 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가능
 - ▶ 어린이 도서관 방문 계기로 최근에 개관한 우리구 어린이 도서관 홍보 효과 거양
 - ▶ 어린이 도서열람실 이용을 통한 북스타트 사업 취지인 영,유아기 독서습관 형성에 기여
 - ▶ 어린이 도서관 사서직등의 전문 인력 활용을 통한 사업의 전문성 확보

03

동물등록제 의무 시행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유기동물 발생 억제 및 유실동물의
신속한 반환 등으로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94-1260

사업개요 ▶ 등록대상 범위

- 주택, 준 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방법

-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체내 삽입, 체외부착 또는 동물 인식표 장착 중 선택하여 동물등록대행업체서 등록신청

▶ 등록수수료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2만원/외장형 무선식별장치:1만5천원
- 동물인식표 부착:1만원(인식표는 소유자가 지참)

▶ 과태료 부과 기준 (단위:만원)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경고	20	40
인식표 미부착	5	10	20

기대효과 ▶ 유실동물 반환을 증가, 유기동물 발생 억제 및 그에 따른 유기동물 처리비용 절감 등

04 무료중개서비스사업 지원기준 확대시행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무료중개서비스사업」의 지원기준(전세보증금)을 상향 조정하여 저소득 주민이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94-1482

달라지는 내 용 ▶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기준(전세보증금) 확대 시행

종 전

- 5,000만원 이하(전세보증금)



변 경

- **6,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기대효과 ▶ 저소득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기준 확대로 폭넓은 수혜제공
▶ 저소득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

05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소비자, 생산자, 근로자와 같은 이용자 소유회사로 영리행위·비영리행위를 통해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단 2094-2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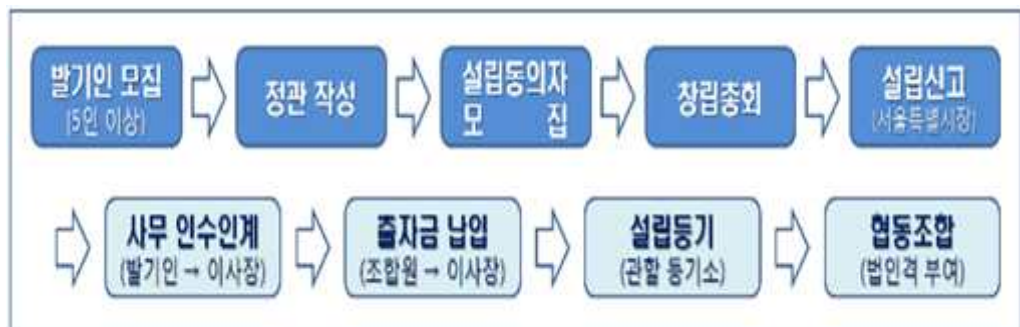
사업개요 ▶ 추진배경

- 5인 이상이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 가능

▶ 협동조합 설립센터 운영

- 상담센터 : (재)사회투자지원재단(노원구 상계로 23길4)
- 운영시간 : 09:00 ~ 18:00(월~금, 단 공휴일 제외)
- 상담방법 : 전화 및 방문(기초상담, 신고절차 및 준비서류등)

▶ 절차



- ### 기대효과
- ▶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안정 등 경제안정 효과 기대
 -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복지’에 기여

06 겨울철 연탄재 전면 무상 수거

음식점, 미용실 등 소규모 영업장에서 사용한 난방용 연탄재 무상 수거로 연탄사용 가구의 연탄재 처리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청소행정과 2094-1951

사업개요

▶ 대 상

- 난방용 연탄재 사용가구 및 소규모 영업장

▶ 방 법

- 연탄재는 투명한 비닐 봉투, 6장 이내로 담아 배출

- 연탄재 수거는 생활폐기물 배출요일에 맞추어 처리 합니다.

달라지는
내 용

종 전

• 가정용 연탄재만 무상 수거



변 경

• 청소대행 업체에서 가정용 및 소규모 영업장에서 배출하는 연탄재 모두 무상 수거합니다.

07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실시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고,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사업을 통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정책 추진 및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94-1951

사업개요

▶ 대 상

- 공동주택 전체 세대

▶ 방 법

- 공동주택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용기에 배출하고, 120 ℓ 수거용기가 가득차면 납부필증(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함

기대효과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량 실현

- ▶ 음식물쓰레기 발생단계부터 수거 시까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08 만0~5세 무상보육 전면 확대 시행

무상보육 대상을 확대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94-1750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만0세 ~ 만5세 이하 아동
- ▶ 지원내용
: 시설 이용 시 보육료, 가정양육 시 양육수당
- ▶ 지원금액

구 분	시설이용 시	가정양육 시
만0세	394천원	200천원
만1세	347천원	150천원
만2세	286천원	100천원
만3세	220천원	100천원
만4세	220천원	100천원
만5세	220천원	100천원

- 기대효과 ▶ 양육수당 확대를 통한 가정양육 활성화
- ▶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지원 체계 구축
- ▶ 시설보육과 가정양육간의 지원 격차 완화

09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를 통하여 여행시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094-0603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외교통상부 기준변화에 따른 수수료 변경
(여권법 시행령 제39조와 관련)

▶ 대 상 : 발급여권

종 전

달라지는 내 용

- 10년 : 55,000원
- 5년(만8세이상) : 47,000원
- 5년이상(만8세미만) : 35,000원
- 기간연장 재발급 : 25,000원

변 경

- 10년 : 53,000원
- 5년(만8세 이상) : 45,000원
- 5년이상(만8세미만) : 33,000원
- 기간연장 재발급 : 23,000원
- ※ 기타수수료는 이전과 동일

10 여권수령 이용 수수료 변경

여권수령 이용 수수료 인상을 통하여 보안 강화 등 보다 편리하게 여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094-0603

사업개요

▶ 추진배경

- 2012년 10월 1일자로 우편등기수수료 표준요금 조정 시행에 따른 변경

▶ 대 상

- 등기 수령 하는 여권

종 전

달라지는 내 용

- 여권등기 수령 본인 부담액 : 3,000원



변 경

- 여권등기수령 본인 부담 금액 : 3,200원

11

공공장소 전면 금연확대

‘12.12.8일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으로 공공장소 전면
금연 구역화 및 금연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장소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비흡연자의 혐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2094-1892)

달라지는
내 용

▶ 2012년 12월 8일부터 변경되는 금연구역 지정제도

구 분	전(前)	후(後)
운영방식	①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②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구분 지정 (시설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곳) * 흡연구역, 영업 등에 사용 가능	시설 전체 금연 * 흡연실(室) 설치 허용
대상시설 (1)	①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 초·중·고등학교의 교사(校舍) - 의료기관, 보건소 - 어린이집	-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 의료기관, 보건소 - 어린이집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 추가> - 유치원 -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등 청소년활동시설 -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② 시설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곳	
	-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사무실, 실험실, 화장, 강당 및 로비)	-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 300석이상 공연장 (객석, 관람객 대기실 및 사무실)	- 300석이상 공연장
	- 연면적 1000㎡이상 학원 (강의실, 학생 대기실 및 휴게실)	-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이상 학원
	- 대규모점포와 그 지하 상점가 (지하 상점가 중 매장 및 통로)	- 대규모점포와 그 지하 상점가
	- 관광숙박업소(현관 및 로비) - 대학교 교사(校舍)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당 및 화장)	- 관광숙박업소 - 대학교 교사(校舍)

	- 1천명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 (관람석 및 통로)	-1천명이상 관객 수용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사무실)	-사회복지시설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승강장·지하보도 (승객대기실, 승강장, 국내선항공기, 선실,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전철의 지하역사·승강장·차량, 지하보도)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 유상운송수단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 유상운송수단
	- 목욕탕(탈의실, 목욕탕내부)	- 목욕장
	- PC방(영업장 내부1/2이상 구역)	- PC방 ※ 2013.6.8일부터 단속규격없이 일제 시행
	- 만화대여업소 (영업장 내부 1/2이상구역)	- 만화대여업소
	-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사무실, 민원인 대기실)	- 국회의 청사 - 법원의 청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공공기관(공기업·타공공기관)의 청사(288개) - 지방공기업의 청사
대상시설 (2)	※ 상기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음식점> - 150㎡이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장 내부 2분의 1이상의 구역) *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외 <규제대상 음식점 종류> ①휴게음식점(패스트푸드점, 커피숍) ②일반음식점(한식·중식·일식·레스토랑 등) ③제과점	<음식점> ① (2012년 12월부터) 150㎡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② (2014년 1월부터) 100㎡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③ (2015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
과태료	①금연구역 지정기준 위반시 ‘소유자 등’ 대상 - 500만원 1차 위반 : 170만원 2차 위반 : 330만원 3차 위반 : 500만원 * 2011년 12월 8일 변경 (기존:300만원)	- 500만원 1차 위반 : 170만원 2차 위반 : 330만원 3차 위반 : 500만원
	②금연구역에서 흡연시 ‘흡연자’ 대상 - 전체 금연구역 : 10만원 - 금연/흡연구역 구분 : 5만원	- 10만원으로 통일

기대효과 ▶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확대로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공공장소 금연문화 정착에 기여**

1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임신이 어려워 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2094-0833

달라지는
내 용

▶ 의료지원금 증액

종 전

2012년(체외수정)	
일반 180만원	1차~3차
기초수급자 300만원	
4차 100만원(일반, 수급자 모두)	



변 경

2013년(체외수정)	
일반 180만원	1차~4차
기초수급자 300만원	
*4차까지 지원 금액 동일	

13 예방접종 관련 국가지원 항목 확대

영유아 대상 필수예방접종 확대 및 만 65세 이상 성인 대상 무료 예방접종 국가 지원을 확대하여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2094-0825

달라지는
내 용

▶ 예방접종사업 확대 시행

-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에 뇌수막염 추가
 - 대 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내 용 : 기존 10종에 한해 실시하던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에 뇌수막염 추가 무료 접종 실시
 - 장 소 :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 시행일 : 2013.03.01부터
(단,약품수급에 따라 변동 가능)
- 만 65세 이상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실시
 - 대 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내 용 : 어르신들의 폐렴환자 급증을 막고 후유증을 감소시키고자 무료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
 - 장 소 : 중랑구보건소 예방접종실
 - 시행일 : 2013.05.01부터
(단,약품수급에 따라 변동 가능)

기대효과 ▶ 국가지원항목의 확대로 경제적 부담감소 및 적기접종 실시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그 유행을 방지





바로알기 & 바로 알리기

서울시 달라지는 제도

0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02.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03. 서울의료원 환자안심병원운영
04. 음식점 옥외 가격표시제 시행
05.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대상품목 확대
06. 음식점 메뉴판 가격표시기준개선
07.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08. 학습준비물비 지원확대
09. 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금 지급
10. 여성 일자리 지도 모바일 서비스 개시
11. 운행자동차 배출가스관리제도 개정
12.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이행
13. 가로수 입양제도 시행
14.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15.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16. 정기이용권 버스도입
17. 유용한 주차정보 실시간 제공 서비스
18. 장애인 콜택시 증차
19. 석계역~별내지구간 버스전용차로 개설
20. 상세주소 부여제도 시행
21.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22. 주민제안 공동체 활동 지원

0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대도시 서울의 특별한 여건을 반영한 서울형 기초 보장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133-7347

- 사업개요 ▶ 선정기준 :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 자격미달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 ▶ 지원기준 : 기초수급자 1/2수준의 생계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 ▶ 추진방법
- 상반기 : 제도 안내 및 대상자 발굴
 - 하반기 : 최저생계비 60% 이하 대상자부터 우선지원

종 전

달라지는
내 용

- 법적대상이 되지 못하는 빈곤층은 지원 곤란



변 경

-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지원**

- 기대효과 ▶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지원으로 빈곤 계층의 생활안정 및 사각지대 해소

02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지급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의 송고한 뜻을 기리고자 2013년부터 특별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복지정책과 2133-7343

사업개요 ▶ 지급대상 : 의사자(본인)50명, 의사자(유족:선순위자 1명) 68명
- 대상자 총 118명중 68명지급, 2014년도에 50명 지급

▶ 지급내역
: 의사자 3천만원, 의사자 1급1,500만원~ 9급 50만원

▶ 지급횟수 : 1회

▶ 지급기준 : 의사상자 인정년도, 거주지별, 소득별 등
세부지급기준

▶ 신청장소 : 관할자치구 구청

달라지는
내 용

종 전

- 의사상자에 대한 기념표석 설치



변경

●의사자 및 의상자에게 등급별 특별위로금 지급

기대효과 ▶ 의사상자의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정의사회 구현에 기여

03 서울의료원 환자안심병원 운영

2013년부터 서울의료원이 환자안심병원(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운영되어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보건의료정책과 2133-7520

- 사업개요 ▶ 대 상 : 의사 판정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환자
- ▶ 운영병상 : 서울의료원 내 180개 병상을 '보호자 없는 병상'으로 운영
※ 서울의료원 총 병상 : 623개
- ▶ 이 용 료 : 무료
- ▶ 방 법 : 간호간병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질 높은 간호간병 서비스 제공

종 전

- 달라지는
내 용
- 대 상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서비스
 - 방 법 : 공동 간병인 제도
(간병인 파견업체를 통한 고용)

변 경

- 대 상 : 모든시민이 이용 가능한 보편적 서비스
- 방 법 : 간호간병 인력을 확충하여 병원 책임하에 직접 간병서비스 제공
※공동간병인 제도 운영 병행

- 기대효과 ▶ 모든 시민이 이용 가능한 보편적 제도로 병원이 직접 책임을 갖고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 및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
- ▶ 병원이 직접 고용을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 일자리 창출

보충자료

※ ‘환자 안심병원’의 개념

1. 환자와 가족을 위한 안심병원
 - 간호사의 수를 늘려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 전체 병상중에서 180 병상을 보호자가 없어도 되는 병실로 운영
2. 장애인 환자를 위한 안심병원
 - 신체 및 정신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인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 장애인이 편안하게 이용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3. 여성 환자를 위한 안심병원
 - 사생활 보호는 물론, 여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 여성전용 응급실, 진료실, 병실 운영
4. 시민 모두가 좋은 의료서비스를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병원
 - 양질의 의료, 낮은 의료비 부담, 사회복지사의 상담 서비스 제공 등

※ 서울의료원 ‘환자 안심병원’ 추진방향

- 간호사를 확충하여 질 높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간병까지도 병원이 책임지는 ‘환자안심병원’을 목표로 추진
-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는 공공병원으로서 새로운 모델 제시

04 음식점 옥외 가격표시제 시행

2013년 1월 31일부터 45평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주요 메뉴의 가격정보를 주출입구 등 음식점 외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식품안전과 6361-3869

- 사업개요 ▶ 대 상 : 면적 45평 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 표시대상 : 소비자가 최종 지불해야 하는 가격
(부가가치세, 봉사료 포함)
- ▶ 표시품목 : 주요 메뉴 5가지 이상
- 대표품목 5개 이상, 메뉴가 5개 미만일 경우 모두 표시
-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품목은 1가지 이상 반드시 표기
- ▶ 표시방법 :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에 확인 가능한 곳에 표시
-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 밖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부공간
- 출입구가 둘 이상인 경우 주출입구는 필수, 보조 출입구는 자율
- 창문, 외벽면, 1층로비, 엘리베이터 입구 등에도 가능
- 기대효과 ▶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 및 합리적 선택의 기회 제공
- ▶ 업소 상호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 및 영업자 및 소비자의 편익 증대

05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대상품목 확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종전 12개 품목에서 16개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식품안전과 6361-3869

사업개요 ▶ 대상업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포함)

▶ 확대품목 : 양고기(염소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달라지는
내용

종 전

• 12개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민물장어)

변 경

• 16개품목

쇠고기, 돼지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닭고기 (배달용 포함), 양고기(염소포함), 쌀,
배추김치,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민물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기대효과 ▶ 소비자 알 권리를 확보하고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06 음식점 메뉴판 가격표시기준 개선

2013년부터 모든 식품접객업소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이 표시되며 고기는 100g단위로 가격이 표시됩니다

식품안전과 6361-3869

<음식점 메뉴판 가격표시 개선>

- 사업개요 ▶ 대상업소 : 모든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등)
▶ 표시방법 : 최종 지불 가격(부가가치세, 봉사료 포함)

<고기 판매가격 표시기준 개선>

- ▶ 대상업소 : 일반 음식점(식육 취급업소)
▶ 표시방법 : 고기 100g당 기준 가격으로 표시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도 함께 표시 가능

종 전

달라지는
내 용

- 메뉴판 가격 표시 : ◆◆요리 10,000원
(※봉사료 10%, 부가가치세 10% 별도)
- 고기 가격 표시 : 갈비 1인분 180g 18,000원



변 경

- 메뉴판 가격 표시 : ◆◆요리 12,000원
- 고기 가격 표시 : 갈비 100g 10,000원
(갈비 1인분 18,000원)

기대효과 ▶ 가격표시에 대한 기준 개선으로 소비자 혼선 예방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기여

07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여성 안전대책을 통해 여성 대상 범죄 및 폭력을 예방하고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2133-5019

사업개요 ▶ 싱글여성 홈(HOME)방법 서비스

- 저소득 비혼여성 1인 독신가정(3,000가구)에 인터넷을 활용한 자가 방법 서비스 실시(주거침입 방지, 경비요원 출동 등)

▶ 여성폭력 제로 아카데미 운영

- 성범죄 이론교육, 호신술 실전교육 등 이론·실전·수단을 결합한 효과적인 자기방어 교육실시

▶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센터 내 ‘여성폭력 전문상담원’ 신규배치

- 서울시 4개지역(북부,서부,영등포,강남)에 전문상담원 배치

▶ ‘여성폭력 없는 마을’ 운영을 통한 안전한 마을 신규 모델 구축

▶ 여성안전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

- 1인 여성가구 밀집지역에 무인택배 보관함(50개소 내외) 설치로 택배 위장 범죄발생 사전 차단

기대효과 ▶ 여성 폭력 및 범죄에 대한 여성의 자기 방어 능력 제고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지원강화

▶ 각종 여성안전 대책을 통한 여성폭력 사전예방으로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08

학습준비물비 지원확대

학습준비물 구입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13년부터 학습준비물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학교지원과 2171-2256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내 초등학생 약 49만명
- ▶ 지원내용 : 초등학생 1인당 연3.5만원의 학습준비물비 지원
(서울시 1.5만원, 교육청 2만원 지원)
- ▶ 지원방법 : 교육청으로 사업비 전출 후 11개 지역청별
해당학교로 교부

달라지는
내 용

종 전

- 지원금액 : 초등학교 1인당 3만원
(서울시 1만원, 교육청 2만원)



변 경

- 지원금액 : 초등학교 1인당 3.5만원
(서울시 1.5만원, 교육청 2만원)

- 기대효과 ▶ 학부모의 부담 경감 및 효과적인 수업지원으로 공교육
서비스 질 강화
- ▶ 교육격차 해소 및 보편적 복지의 실현

보충자료

※ 학습준비물이란?

-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수업시간에 활용되는 각종 물품으로서 교수 자료, 또는 내구성 있는 비품은 해당되지 않음

※ 학습준비물 품목 선정

- 학습준비물 목록을 참고하여 학습준비물 선정위원회, 학년협의회 부장회의 등을 거쳐 결정

※ 학습준비물의 구매

- 학습준비물지원센터를 확보, 학습준비물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낭비·훼손·도난 예방하는 교육과 준비물을 아껴 쓰는 절약교육 및 환경교육 실시
- 학부모들의 중복구매 방지를 위하여 지원품목을 학부모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안내

09 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금 지급

중소기업 취업 장려금을 청년취업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근로의욕을 높이겠습니다.

창업취업지원과 2133-5505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29세미만
청년미취업자로서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한자
- ▶ 대상기업 : 국가산업의 기능기술분야 기업 및 인력난이
심한 기업 중 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 ▶ 지원방법 : 지원대상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직접
일정기간 지원금 지급
- ▶ 지원규모 : 예산 범위 내 2년간 지원(월 275천원)
- 기대효과 ▶ 청년들의 희망급여 수준을 일정부분 충당하여 취업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능기술을 습득 하도록 하여 그 분야에
안정적으로 정착 하도록 유도

10 여성 일자리 지도 모바일 서비스 개시

2,000여개 여성 일자리를 지도에 표기하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언제, 어디서나 가까운 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공간정보담당관 6361-3282

- 사업개요 ▶ **내 용** : 서울일자리 플러스센터에 등록 된 여성 채용정보
- ▶ **방 법** : ‘스마트 서울맵’, 서울지도 홈페이지 (gis.seoul.go.kr)
- ▶ **주요기능**
- GPS 기능을 활용,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가까운 일자리 실시간 검색
 - 지도 위 아이콘 클릭으로 모집직종, 급여, 근무형태, 가입보험 등 상세 구인정보 확인

달라지는
내 용

종 전

- 안내방식 : 구인기업의 위치를 지번주소로만 확인 가능하여 거주지 인근 일자리 검색에 한계



변 경

- 안내방식 : 구인기업의 위치를 지도위에 표시 하여 거주지 인근 일자리 검색 가능

- 기대효과 ▶ 경력단절 및 워킹맘의 일자리 찾기에 도움
- ▶ 언제, 어디서나 현재 위치 주변의 일자리 검색가능

11 운행자동차 배출가스관리제도 개정

2013년부터 운행자동차 배출가스관리제도가 개정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 되고 수시점검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친환경교통과 2115-7734

사업개요 ▶ 운행차 수시점검 위반시 과태료 조항 삭제

- 배출허용기준초과차량은 초과율 상관없이 개선 명령
- 개선명령 미 이행시 10일 이내 운행정지
- 운행정지 미 이행시 고발(300만원이하 벌금) 조치

▶ 차량운행자 및 소유자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 소명삭제

- 배출가스보증기간 이내 차량의 경우 소명책임을 제작사에게 부여

종 전

달라지는
내 용

- 수시점검 위반시 : 운행차 수시점검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소명책임 : 배출가스보증기간이내 차량인 경우 초과원인을 운행자나 소유자가 책임 소명



변 경

- 수시점검 위반시 : 운행차 수시점검 위반시 과태료 없이 개선명령 조치후 불이행시 행정처분
- 소명책임 : 배출가스보증기간이내 차량인 경우 소명책임을 제작사에게 부여

기대효과 ▶ 운행자동차 수시점검의 효율성 증대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운행자 또는 소유자의 불편감소

12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이행

단위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총량을 허용총량 이내로 관리하여 하수 수질을 근원적으로 개선합니다.

물관리정책과 2115-7891

- 사업개요 ▶ 대 상 : 한강수계 서울, 경기, 인천 관할구역
▶ 내 용 :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그 목표를 넘기지 않도록 수질오염 부하량을 관리

※ 한강(행주) 지점 목표수질 : BOD 4.1mg/ℓ, T-P 0.236mg/ℓ

▶ 방 법

목표수질 설정



총량관리계획 수립



시 행



이행평가

- 관리대상 유역내의 개발사업은 총량관리계획에서 정한 삭감계획 추진등을 통하여 지역개발 부하량 범위 내에서 추진

종 전

달라지는
내 용

- 규제방식 : 농도규제 폐수중 오염물질 농도 규제
(농도 = 오염부하량/ 폐수량)
- 규제효과 : 오염원 밀집지대 및 폐수 다량 배출업소가 있는 경우 오염부하 증가를 통제할 수 없어 환경기준 준수가 어려움



변 경

- 규제방식 : 총량규제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
[오염부하량=농도×폐수량]
- 규제효과 :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이 목표 기준 이하로 항상 유지되어 환경 기준 준수가 보장됨

기대효과 ▶ 지역개발과 하천수질개선의 조화로운 추진

13

가로수 입양제도 시행

앞으로 시민(어르신 및 학생)이 가로수를 입양하여 ‘내 나무’처럼 가꾸어 나갑니다.

조경과 2115-7614

- 사업개요 ▶ 대 상 : 가로수노선 1,271개소 1,787km 수목 284 천주
※ 피녹지 339km 5,987 천주
- ▶ 내 용 : 가로수 및 피녹지 수목관리를 저소득층 어르신 및 학생들이 입양하여 관리
- 쓰레기 수거, 잡초제거, 가뭄때 수목에 물주기 등
- ▶ 방 법 : 일정구간 2~3km의 가로수 노선 관리를 위해 1년간 협약체결
- ▶ 행정지원 : 입양 표지판 설치, 청소물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실적 인정

달라지는
내 용

종 전

- 관리주체 : 가로수 및 피녹지 주변 쓰레기 제거, 물주기 작업을 구청에서 관할



변 경

- 관리주체 : 가로수를 시민이 ‘내 나무’로 입양하여 가꾸기

- 기대효과 ▶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의 책임감과 자긍심 부여 및 유지 관리 비용의 절감

14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공동주택과 2133-7149

사업개요 ▶ 대 상

-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되고 국민주택규모(85㎡)
이하 호수가 50% 이상으로 안전등급 C등급인 소규모
공동주택

▶ 점검주기 : 연 2회(반기별1회)

▶ 방 법 : 자치구 담당자 및 안전점검 전문위원의 현장점검



| 변압기 등 전기시설 점검 현장

기대효과 ▶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해왔던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을 안전사고 및 재해로부터 보호

15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2013년부터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여하여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 부상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방과 3706-1521

사업개요 ▶ 가입시기

- 신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영업전 의무가입
- 기 운영 중인 다중이용업소
: 법 시행이후 6개월 이내 보험가입

▶ 의무 불이행시 규제조항

- 보험 미가입 및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영업주,
계약 해지 보험회사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종 전

달라지는
내 용

- 가입대상 : 2,000㎡이상 다중이용업소 입점
건축물 소유자 화재보험 가입



변 경

- 가입대상 : 전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화재 배상
보험 의무 가입

기대효과 ▶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능력 확보로 화재로 인한
피해자보호

보충자료

※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가입주체가 되어, 화재 등의 재해에 타인배상을 주목적으로 하여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손해를 보장하도록 업소단위로 가입하는 보험임

※ 가입 대상은 ?

- 일반음식점, 노래방, 유흥·단란주점 등 22종 다중이용업소로서 면적에 상관없이 전체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금액은?

- 사망자 1인당 최대 1억원, 재산피해 1억원을 상한으로 정하여 하위법령을 개정추진, 보험 개발원에서 산정한 전체 평균 보험료는 약 7만원(월5,800원)으로 예상됨

16 정기이용권 버스도입

정기이용권 버스를 도입하여 승용차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흡수하고 광역버스 증차를 억제하여 출퇴근시간대 교통혼잡을 해소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 6360-4556

사업개요 ▶ 대 상 : 4개노선(정기이용권버스 신설노선 계획)

구분	기점	종점	운행대수	운행횟수	운행형태
1노선	성남	강남역	3대	3회	광역급행형,고속도로 운행
2노선	일산	서울역	3대	3회	광역급행형,중앙차로 운행
3노선	강동	강남역	2대	2회	간선급행형,올림픽대로 운행
4노선	은평	강남역	2대	2회	간선급행형,무정차 운행

- ▶ 운행시간 : 06:00 ~ 09:00(1일 4회이내)
- ▶ 이용요금 : 월정액(1~2개월) 요금 선납방식
- ▶ 운영방식 : 지정좌석제

종 전

- 출근 시간대 승객 집중으로 혼잡 등 광역 버스 이용 불편



변 경

- 지정좌석식 정기이용권 버스운행으로 교통혼잡 해소 및 시민편의 제고

달라지는
내 용

기대효과 ▶ 출퇴근시간대 광역버스 이용 시민의 교통 편의 제고, 서울시내 교통 혼잡 해소

17 유용한 주차정보 실시간 제공서비스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나,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필요한 주차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계획과 6321-4271

- 사업개요 ▶ 대 상 : 시내 공영주차장, 민간주차장
(주택용도 부설주차장 제외)
- ▶ 제공정보 : 목적지 주변 주차장 위치·주차면수·요금·운영시간
시영주차장 및 일부 구영주차장의 실시간
주차가능정보 등
- ▶ 제공수단 : 스마트폰 앱, 인터넷등

종 전

- 제공수단: 인터넷을 통해 시영주차장 현황정보
(주차장 위치, 주차면수, 운영시간, 요금등)만 제공



변 경

달라지는
내 용

- 주택용도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모든 주차장의 현황
정보와 시영주차장등의 실시간 주차가능정보를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제공

- 기대효과 ▶ 유용한 주차정보 제공으로 주차시설 효율적 이용
- ▶ 주차를 위한 불필요한 배회 및 불법주차 방지로
교통 혼잡 및 대기오염 완화

18

장애인 콜택시 증차

중증 장애인의 이동편의제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더 늘려 탑승 대기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보행자전거과 6321-4240

- 사업개요 ▶ 운영규모 : 특별교통수단 차량 410대, 콜센터 1개소
- ▶ 이용대상 : 1·2급 지체, 뇌병변 장애인 및 1·2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
- ▶ 이용요금 :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5km이내 1,500원 등)
- ▶ 운행지역 : 시내 및 시계 12개 지역, 인천국제공항

달라지는
내 용

총 전

- 대 수 : 특별교통수단 360대



변 경

- 대 수 : 특별교통수단 410대 운영(50대증차)

- 기대효과 ▶ 차량 증차로 30분 이내 탑승률 제고 및 이용 대기시간 단축
- 2012년 30분 탑승률 66%에서 2013년 70% 이상 목표

19

석계역 ~ 별내지구간 버스 전용차로 개설

남양주 별내 택지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석계역~별내 지구간에 버스전용차로를 개설하여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개선 하겠습니다.

교통운영과 6361-3981

- 사업개요 ▶ 연장구간 : 서울시 석계역 ~ 남양주시 별내역 간
 - 전체구간 : 8.1km(서울시 구간 5.2km+ 경기도 구간 2.9km)
 ▶ 공사기간 : 2013. 3월 ~ 10월



- 기대효과 ▶ 빠른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남양주 별내지구 및 서울 동북부 간 이동주민들의 생활편의 증진

20

상세주소 부여제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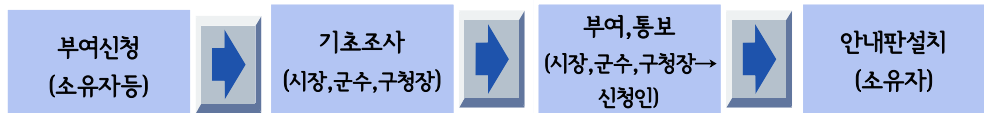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동·층·호와 같은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행정과 2133-5841

사업개요 ▶ 대 상 : 원룸 · 다가구주택, 상가 건물등에 동·층·호등
상세주소 부여

※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건축물 대장에
동·층·호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상세주소 부여대상이 아님

▶ 방 법 :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서 작성·제출
▶ 절 차



- 부여신청 :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건물 등이 위치한 시군구의
지적민원실에 상세 주소 부여신청
- 결과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 조사 후 상세주소 부여·통보
 - ※ 부여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세주소 부여·결과통보
- 안내판설치 : 건물 등의 소유자가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
- 홈페이지 안내 : 국가주소안내시스템에 부여한 상세주소 안내

21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2013.1.1일부터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연료절감에 따른 경제적 비용 감소와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배출가스 절감으로 에너지 절감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친환경교통과 2115-7734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

▶ 추진내용

- 공회전 제한 시간 조기 정착을 위한 계도 홍보
- 공회전차량 지도 단속 실시(서울시 친환경교통과, 자치구 환경교통관련과)
- 기준시간 초과차량 과태료 5만원부과
- 공회전 제한시간 : 휘발유·가스차량 3분, 경유차량 5분

※ 대기온도가 5℃미만(겨울철)이거나 25℃이상(여름철)은 10분 이내 허용

달라지는 내 용 ▶ 공회전 제한장소 확대

종 전

-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자동차전용극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변 경

- 서울시 관할구역 전역으로 확대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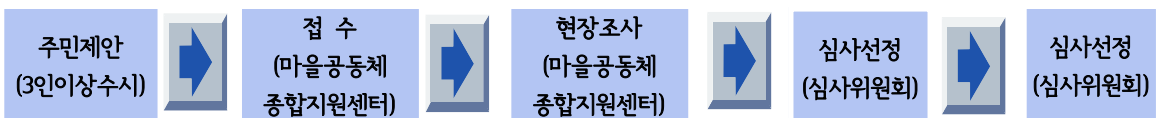
주민제안 공동체 활동 지원

범위 제한 없이 다양한 분야의 공동체 활동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작고, 쉽고, 재미있는’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2133-6333

사업개요 ▶ 대 상 : 특정분야가 정해지지 않은 주민 제안사업 및
복합적인 주민공동체 활동

▶ 추진방법



▶ 선정기준

- 사업의 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공익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 자발성 및 창의성, 주민참여
(사업에 대한 열의), 자원확보, 민관파트너십,
사업의 파급효과 등

달라지는
내 용

종 전

- 지원범위 :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35개로 한정



변 경

- 지원범위 : 범위 제한없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주민제안에 대해 맞춤형 지원

달라지는
내 용

종 전

- 원룸, 다가구 주택 등의 경우 건물 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 등 상세주소 없음

변 경

- 2013.01.01부터 원룸·다가구주택상가건물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편리하게 사용가능
 - 건물의 동·층·호를 표기하여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 공부상 상세주소 표기를 일치



소유자 및 임차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5길 22



소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5길 22, 301호
임차인1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5길 22, 201호
임차인2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5길 22, 101호

기대효과

- ▶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반송, 분실,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시민생활 불편해소
- ▶ 공부상 상세주소 표기를 일치시켜 주소정보의 효율적 관리 활용
- ▶ 정확, 상세한 주소체계를 구축, 위치 찾기의 편리를 도모하고 사회비용 절감



바로알기 & 바로 알리기

중앙부처 달라지는 제도

01.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02.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03.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04.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
05.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06.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07.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조정
08. 비과세대상 야간 근로수당 등 확대
09. 근로장려세제 확대적용
10. 연금소득 분리과세 확대
11. 2,000CC초과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인하
12. 상속주택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주택 제한
13.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연장
14. 모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관세율표 전면개정
15. 친서민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16. 신용카드 발급 기준강화 및 이용한도 합리화
17.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 제한 등에 관한 규정시행
18. 미세먼지 예보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19. 자원순화사회 구축을 위한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20.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 시행



21.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
22.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23.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정비
24.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세부 사용 기준 마련
25. 아파트관리, 입주민 자율 확대
26.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27. 도시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
28.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29. 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30.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31.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연금지원 확대 등
32. 발달재활서비스(舊장애아동 재활치료) 확대
33.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
34. 독거노인 보호 강화
35.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확대
36.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보고기관 통합운영
37. 저소득층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절차 개선
38.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지원 확대
39. 지상파 디지털 TV방송 전면 실시
40.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107 손말이음' 개통

01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소득세 특별공제의 종합한도를 신설합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창투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의 특별공제에 대해 합계 2,500만원의
종합한도를 신설합니다.

* 장애인 관련 의료비, 특수교육비는 한도 계산 시 제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2

02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4년 → 5년으로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3년간 연장됩니다.

*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등에 대해 4년간 50% 세액감면

노인 · 장애인 · 부녀자 등을 위해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등 고용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 법인세 감면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03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한부모 소득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2

04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율 확대

서민·중산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였습니다.

• 현재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지출액의 40%를 공제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는 소득공제율이 50%로 확대됩니다.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소득 공제율 확대>

- 추진배경 : 서민, 중산층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① 적용요건 :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세입자인 무주택 세대주
 - ② 공제율 : (현행) 월세 지출액의 40% → (개정) 월세 지출액의 50%
 - ③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2

05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소득공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비 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 합니다.

- 2013년부터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 수업 교재구입비,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 교재구입비에 대해서도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교육비 소득공제제도 실효성 강화
- 주요내용
 - ① 소득공제 대상 확대
 - : 어린이집, 유치원의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 및 교재비
 - :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 수업 교재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2

06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공제한도를 확대 합니다.

-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직불형 카드와 같은 30% 공제율을 적용하고, 소득공제 한도가 추가로 100만원 늘어납니다

07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조정

건전소비 및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경감 등을 위해 직불형 카드의 사용을 확대 하도록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조정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공제율이 확대되며,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조정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2

08 비과세대상 야간 근로수당 등 확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생산직 근로자 지원을 위해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을 확대합니다.

- 현재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연 240만원 한도로 야간근로수당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으나,
- 2013년부터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 총급여액 2천5백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2023-7418

09 근로장려세제 확대 적용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확대 됩니다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3년부터 신청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직전년도 3개월 이상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한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었으나, 2013년부터 신청년도 3월 현재 기초생활보장급여(주거,생계,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4

10 연금소득 분리과세 확대

고령층인 연금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등 납세협력 부담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확대 됩니다.

- 2013년부터는 공적연금을 제외하고 사적연금만 연 1,200만원(현행 공적연금 포함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11 2,000CC초과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인하

2012. 03. 15일 한·미 FTA 발효에 따라 2,000CC초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2015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 됩니다.

- 2,000CC초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2012.03.15일 10%에서 8%로 인하되었으며, 2013년에는 7%로 인하됩니다.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251

12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주택 제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상속받는 시점에서 보유한 상속인의 1세대 1주택으로 한정합니다.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제한
 - (현행) 상속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도 매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 (개선) 상속받는 시점에서 보유한 상속인의 1주택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수도권 밖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상속주택'(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함)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1세대 1주택 판정시 동 상속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해도 비과세 적용 가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213

13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연장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현재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기한이 3년으로 연장됩니다.

•앞으로 소비자는 현금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현금거래 사실 확인 신청을 한 경우 소급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14

모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관세율표 전면 개정

상품을 수출입할 때 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관세율표*의 용어와 문장표현 중 일본식 어휘 및 전문용어 등을 모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였습니다.

<※ 관세율표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품목분류체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97개류(chapter)와 6,670개 품목으로 분류해 놓은 품목분류표 및 각 품목의 관세율로 구성>

•관세율표 용어와 문장 표현에 대한 정비는 1949년 관세율표 제정 이후 63년만에 최초로 추진한 사업으로 2013.1.1.부터 시행됩니다.

•국아, 강시판 등 일본식 어휘를 각각 돼지감자, 널말뚝 등 순 우리말로 변경하고 전문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한자와 영어를 병기하는 한편, 해석상 혼동이 생길 수 있는 표현은 명확히 정리 하였습니다.

15 친서민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행정안전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국내 경기 상황을 감안하여 서민지원을 통한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해 2012년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완료하고 2013년 1월 1일 부터 지방세제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 모든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해 감면을 확대(취득세 50% → 75%)하고, 알뜰주유소 관련된 감면(재산세 50% 감면)을 신설하는 등 서민생활 및 물가 관련일부 감면을 신설·확대하였습니다.

<* 현재 상점 밀집지역의 슈퍼마켓 협동조합(32개, '12.5월 기준)에 대해서만 75% 적용, 기타(50개) 50% 적용 중>

- 다자녀가구(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일몰 기한을 2012년 말에서 2015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였습니다.

-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에 해당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도 2012년 말에서 2015년 말까지 3년간 연장 조치하였습니다.

- 2013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내수활성화, 중산층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자녀양육 부담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2100-3926

16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및 이용한도 합리화

신용카드 남발·남용 등 제반 문제점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강화하고 이용한도 책정기준을 합리화하였습니다.

- 일정한 신용도(개인신용 1~6등급)가 있는 민법상 성년자(만 20세 이상, '13.7월부터 19세 이상)에 한하여 카드가 발급됩니다.(신규발급 시부터)
 - 다만, 저신용자(개인신용 7등급 이하)에 해당되더라도,
 - (i)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 및 채무정보 등에 의해 산출된 '월 가처분소득(월 소득-월 채무상환금)이 50만원 이상'이거나
 - (ii) 직불기반 겸용카드(체크·소액신용)의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신용 한도가 부여된 카드가 발급 가능합니다.
- 가처분소득에 근거하여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책정됩니다. (신규발급 및 기존회원의 카드 갱신 시부터)
 - 카드 발급 이용한도는 ① 가처분소득에 근거한 이용한도액과 ② 직전 6개월간 월 최고 이용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되며,
 - 결혼·장례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한시적으로 월 이용한도를 초과하는 한도 상향조정이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 2156-9856

17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년 9월 28부터「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으로 유해 어린이용품의 관리가 강화됩니다.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4종(DNOP, DINP, TBT, 노닐페놀)에 대해 어린이가 입에 물거나 손으로 만져도 안전한 수준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12.9.27 제정)

※ DNOP(Di-n-Octylphthalate, 다이-n-옥틸 프탈레이트),
DINP(Di-isononylphthalate,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TBT(Tributyltin compounds, 트라이뷰틸 주석), 노닐페놀(Nonylphenol)

- DNOP, DINP의 경우에는 위해성 평가를 거쳐 아이들이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질 때 노출되는 양인 전이량*을 고려해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 전이량 : 제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가 경구(빠는 행위), 피부, 흡입을 통해 사람의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양

- TBT, 노닐페놀은 이미 위해성이 확인되어「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취급제한* 물질로 지정되어 있어 그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 취급제한물질 :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돼 그 용도로의 제조,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한 물질(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5호)

•이에 따라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에 고시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어린이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제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제도의 시행으로 어린이용품 내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다소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60

18 미세먼지 예보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

2013년부터 수도권 대상 미세먼지 예보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대기오염 예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는 8대 시도에서 환경부의 지원을 일부 받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2013년부터 수도권에 한해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세먼지 예보를 직접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 2013년 한 해 동안 먼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14년 이후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예보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예보항목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 및 오존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대기오염 예측 발표)>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 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044-201-6867

19 자원순화사회 구축을 위한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2013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음폐수)에 대한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 그 동안 정부에서는 2006년 런던의정서 발효에 따라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 이의 일환으로 2011년 12월 음폐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3년 1월부터 음폐수 해양배출금지가 시행됩니다.

향후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 저감을 유도함은 물론 음폐수 자원화시설 설치를 통한 에너지화를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5

20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 시행

2013년부터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전국 233개 지역에 확대 실시됩니다.

- 부동산 서류를 하나로, '일사천리'로 업무를 끝낸다는 의미로「일사편리」를 설정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 갈 수 있게 됩니다.
- 지금까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등의 부동산 공적장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하여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또한, 다양한 부동산정보 중 원하는 정보만을 선택하여 발급하도록 하여 부동산거래, 금융, 창업, 건축, 경매, 거래 등의 국민의 경제활동이 보다 편리해지며, 행정기관 방문 절차 및 인허가 첨부서류의 간소화 등 편의를 도모하고 서류 발급에 따른 수수료 절감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044-201-3480

21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0.5%p 내외로 인하하고,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의 금리도 0.5%p 내려 '12.12.21부터 시행됩니다.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예금 금리가 낮아진 상황을 감안하여 근로자·서민전세자금 (현행 연4.0%),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현행 연4.2%),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현행 연5.2%)의 대출금리를 0.5%p 내외 인하하였으며,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수요자	근로자서민전세자금	4.0%	3.7%	<우대금리 조정> -다자녀(1.0→0.5%),다문화 장애인,고령화등(0.5→0.2%) 신규분부터
	근로자서민구입자금	5.2%	4.3%	
	생애최초 구입자금	4.2%	3.8%	
사업자	공공분양 건설자금	5.0~6.0%	3.8~4.0%	민간사업자4.8%(60㎡ 이하)
	공공임대 건설자금	3.0~4.0%	2.7~3.7%	민간사업자2%지원중('13년말)
	국민임대 건설자금	3.0%	2.7%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금리도 가입기간별로 각각 0.5%p씩 인하 하였습니다.

구분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변경전	연 2.5%	3.5%	4.5%
변경후	연 2.0%	3.0%	4.0%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22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조정되어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 그간 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산정 시, 상여금·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고,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세대주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 제도개선으로 상여금 포함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하여 기금을 지원함에 따라 실제 가구소득을 정확히 반영하고, 직종간 소득산정상 불평등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주택기금 자금별 대출 소득요건 조정>

구 분	변경전	변경후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세대주 연소득 3천만원이하 *신혼부부 3천5백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상여금포함) 4천만원이하 *신혼부부 4천5백만원이하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	부부합산연소득 3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4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상여금포함) 4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5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 5천5백만원 이하

국토행양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23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 정비

공동주택의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설계가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에는 획일적인 휴게시설 설치, 안내표지판 규격 및 설치위치 규정 및 주택의 평면을 10센티미터 단위로 설계토록 하는 등 디자인을 제약하는 요소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이 정비되면, 지역 및 단지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주택개발이 이루어져 공동주택 및 도시경관이 수려해질 것입니다.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 정비>

- ▶ 추진배경 : 공동주택 및 도시경관을 고려한 설계기준 마련
- ▶ 주요내용 : 공동주택의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을 정비하여 다양한 주택개발 도모
- ▶ 시 행 일 : 2013년 하반기(잠정)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절차 진행 중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24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세부 사용기준 마련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사용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게 됨에 따라 2013년부터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가 이 기준에 맞추어 안전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있어 비용기준을 제시하였고, 발파·굴착 등의 공사장 주변 시설물 피해방지 대책 기준과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에 대한 세부적 사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이 산업안전보건비와 건설공사안전관리비 사용에 혼선을 없애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주요개정>

- ▶ 추진배경 :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강화
- ▶ 주요내용
 - ①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 비용
 - ② 발파·굴착 등으로 인한 주변건축물 피해방지 대책 비용
 - ③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 대책 비용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044-201-3577

25

아파트관리, 입주민 자율 확대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입주민의 자율이 크게 확대 됩니다.

•지금까지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민의 직선제로만 선출이 가능하였으나,

- 앞으로는 관리규약에 정하게 되면, 동별 대표자들의 모임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간선제로도 선출할 수 있게 되어 선거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입니다.

- 아울러 그간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는 최대2회, 4년간만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었으나, 입주민의 자율성 확대로 앞으로는 2회, 4년간
재임 후 1회 쉬게 되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26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공동주택 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의 수요에 따라 자유로운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 지금까지 단지 내 복리시설은 시설별 설치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설치, 활용이 곤란하였습니다.

- 특히, 복리시설은 규정 범위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주택법)하여, 거주자 특성 변화에 대응 한계가 있었으며, 이용률과 선호도가 낮은 일부 시설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예: 주민운동시설(실외)은 인근동에서 소음민원 등이 빈번히 발생,
작은 도서관은 방치되거나 독서실 등으로 활용

- 앞으로 주민공동시설 총량제가 시행되면, 지역 및 단지특성 등에 따라 총량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입주민의 수요에 맞는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아울러 기존의 주택단지도 총량제를 만족하는 경우 주민공동시설을 자유롭게 활용(용도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27

도시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

도시공원에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조치가 시행되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안전한 여가 휴식공간으로 조성됩니다.

- 도시공원에서 범죄예방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도시공원의 범죄예방 안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공원을 조성할 때 범죄예방을 위하여 공원 내 조명, 나무의 식재방법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또한, 소규모 공원에 철봉·평행봉 등 간단한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공원이용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044-201-3751)

28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안전기준 강화

자동차가 보행하는 사람과 충돌 하였을 때 보행자의 피해(상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합니다.

•차 대 보행자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 이상으로 매년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차 대 보행자 충돌사고 시 보행자 상해를 최소화하여 사회적 비용과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 보행자 머리 및 보행자 다리 상해기준을 마련하여 2013년 1월부터 승용자동차에 의무 적용하게 됩니다.

•앞으로 단계별로 승합차, 화물자동차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안전기준 강화에 따라 차 대 보행자 사고시 보행자의 사망사고나 상해가 많이 감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044-201-3851

29 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는 전액 본인부담이었으나, 2013년 1월부터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50% 감면할 수 있게 됩니다

30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예기치 않은 중증질환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의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치료에 필요하지만 약값이 비싸서 가계에 큰 부담이 되었던 간암(넥사바), 위암약제(TS-1)에 대해 13년부터 본인부담을 5%로 크게 낮추고,
- 암, 심뇌혈관 질환 진단, 검사 및 수술 후 상태확인 등에 필수적이나 비급여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초음파 검사’도 2013년 10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던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틀니 혜택이 2013년 7월부터 50%의 본인부담으로 부분 틀니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2023-7418,8756

31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연금 지원확대 등

2013년도에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기준)이 2012년 55.1만원(부부 88.1만원)에서 58만원(부부 92.8만원)으로 3만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 또한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2012년 43만원에서 2013년 45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3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드리기 위하여

•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가급여의 월 지급액을 2만원 인상하여 지급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집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2023-8672,8654

32 발달재활서비스(舊장애아동 재활치료)확대

현재 37천명의 장애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구.장애아동 재활치료)를 2013년부터 42천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그동안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로 제한되어 서비스를 원하는 일부 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13년부터 150% 이하로 완화되어 5천명이 추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 소득 100% 이상 150%이하 가정의 장애아동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서민가정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울러, 장기적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만18세미만의 모든 중증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2023-8667

33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기관이 확대됩니다.

• 2013년 4월 11일부터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은 장애인 교육 및 정보통신 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상시 30명이상 근로자 사용 작업장은 장애인 고용 및 정보통신 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체육시설, 의료기관 및 모든 법인은 정보통신 의사소통에 있어 장애인에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에 따라 장애인의 교육기관 이용 및 정보접근에 있어 편의성이 증대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2023-8640

34

독거노인 보호 강화

다른 노인가구에 비해 특히 위기대응능력이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독거 노인돌봄서비스의 대상 독거노인이 2012년 142천명에서 2013년 172천명으로, 3만명의 독거노인이 추가 보호됩니다.
- 또한, 낙상 등으로 단기간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의 청소·취사·세탁·외출동행 등을 돕는 가사·활동보조서비스를 신규 도입하여 최대 6천명의 독거노인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2023-8528

35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확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더 늘어납니다.

- 지금까지 치매치료관리비는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4인가족 기준 220만원) 이하인 치매 어르신들에게 지원되었으나,
- 2013년 1월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가족 기준 474만원)이하인 치매 어르신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지원됩니다.
- 또한, 한번 약을 구입하였을 때 매월 나누어서 지급받던 치매치료관리비를 한번에 본인부담금 전부(연간 36만원(월3만원)상한내)를 지급받게 됩니다
예)3개월 치 약(9만원)을 구입했을 경우, '12년에는 3개월에 걸쳐 3만원씩 지급 받았으나,'13년에는 9만원을 한 번에 지급 받음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2023-8533

36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예 보고관 통합 운영

2013년부터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보고가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일원화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보고는 소비자(한국소비자연맹),영업자(한국기능식품협회), 의료전문가(식품의약품안전청)로 나뉘어 운영 되었으나, 2013년 1월부터는 보고기관을 식품안전정보원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작용 보고 전화는 국번없이 1577-2488로 전국 어디서나 단일화된
번호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보고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 사례의 유형에는 가려움,
두드러기, 어지러움, 부종, 황달, 발한, 고열, 호흡이상, 생리이상, 안구
통증, 체중 감소 등이 있으니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와 유사한 추정사례가
있을시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작용 추정사례란 소비자가 신고한 주관적 증상으로 그 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은 아님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정책과 043-719-2257

37

저소득층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편하게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과 재산의 수준에 따라 공정하게 교육비를 지원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처리하던 초·중·고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를 2013년 2월 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게 됩니다.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1회만 신청하면 대상자격을 유지하는 한 매년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받는 학생의 노출도 최소화 됩니다

※방문신청시 읍면동 주민센터의 혼잡이 예상되므로, 편리한 교육비 신청을 위해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또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학생복지과 2100-6521

38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 학교 학습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2012년에 차상위계층 70%까지 지원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2013년에는 차상위계층 100%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1인당 지원규모도 2012년 연48만원(월4만원)에서 2013년 연 60만원(월5만원)수준으로 상향하여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을 보다 현실화 하셨습니다.

- 이를 계기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팀 2100-6415

39 지상파 디지털TV방송 전면 실시

2013년 1월부터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아날로그TV를 디지털TV로 교체하시면 지상파 방송을 고화질(HD)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이 완전 종료되므로 안테나를 통해 아날로그TV 수상기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없습니다

•잘 나오던 TV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전국 우체국과 주민센터에 디지털전환 정부지원을 신청하여 디지털 TV로 교체하시거나, 아날로그 TV에 디지털컨버터와 전용안테나(UHF)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정책과 750-2337

40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107 손말이음’ 개통

청각·언어 장애인이 전화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신중계서비스가 2013년 1월부터 「107손말이음」으로 새롭게 거듭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화종류(음성, 영상SMS)와 통신사별로 서로 다른 번호를 사용하여야 했으나,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단일번호 107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기 쉬운 단일번호와 새이름 사용으로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말과 이음은 각각 수화와 중계를 뜻하는 순 우리말

방송통신위원회 와이브로활성화팀 750-2542

